#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71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김재원·조 국·서왕진

김준형 · 강경숙 · 이해민

박은정 · 차규근 · 김선민

정춘생 • 한정애 • 박정현

신장식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은 1923년 일본이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 총독부 도서관으로 설립되었는데, 1945년 광복 이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 1963년에 도서관법 제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이나 '중앙'이라는 단어는 서열을 나타내거나 방위를 붙인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만 사용하는 장소와 한국인도 사용하는 장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국가기관의 명칭에 이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족적 정기를 세우고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 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 등).

#### 법률 제 호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중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중앙도서관"을 각각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 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 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 국도서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중앙도서관장"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중앙도서관장"을 "국립대한민국 도서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 민국도서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한 다.

제26조제7호 중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중앙도서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법에 따른 국립대한민국 도서관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u>국립중앙도서관</u> 및 국립장	제3장 <u>국립대한민국도서관</u> 및 국
애인도서관	립장애인도서관
제19조( <u>국립중앙도서관</u> 의 설치	제19조( <u>국립대한민국도서관</u> 의 설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	치 등) ①
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	
속으로 <u>국립중앙도서관</u> 을 둔다.	국립대한민국도서관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② 국립대한민국도서관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효율적	
인 업무처리 및 지역 간 도서	
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	
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u>국립중앙도서관</u> 의	③ 국립대한민국도서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관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업무) ① <u>국립중앙도서관</u>	제20조(업무) ① <u>국립대한민국도</u>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u>서관</u>
한다.	<u>.</u>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③
위하여 <u>국립중앙도서관</u> 에 자료	국립대한민국도서관

보존연구센터를 둔다.

- ④ (생 략)
- ⑤ <u>국립중앙도서관</u>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u>국립중앙도서관</u>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④ (현행과 같음) ⑤ <u>국립대한민국도서관</u>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u>국립대한민국도서관</u> 
②  국립대한민국도서관
  ③ <u>국립대한민국도서관</u>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 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 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④ (생략)

-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 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
    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 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 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립중앙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대한민국도서관	
<u>.</u>	
② 국립대한민국도서관	
· 	
③	
국립대한	

<u>도서관장</u>에게 해당 정보의 정 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u>국립중앙도서관장</u>이 행한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사람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u>국립중앙도서관</u>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 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 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⑥ (생략)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 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 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 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민국도서관장
4
국립대한민국도서관장
· ⑤ 국립대한민국도서관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국
<u></u>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 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 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 ② <u>국립중앙도서관</u>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 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 여야 한다.
- ③ (생 략)
-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6. (생략)
  - 7. <u>국립중앙도서관</u>의 도서관자 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 사업 등 지원
  - 8. (생략)

립대한민국도서관
· ② 국립대한민국도서관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
1. ~ 6. (현행과 같음)
. — - , —
7. 국립대한민국도서관
8. (현행과 같음)